

## 연금시장리뷰 4호

### 노후불안 시대의 연금개혁 과제 (1)\*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 김 동 열 연구위원 (3669-4112, dykim@hri.co.kr)

\* '노후불안시대의 연금개혁 과제'는 2회로 나누어 연재됨 (제1회는 12월7일, 제2회는 12월21일)

## □ 노후불안 시대의 연금개혁 과제 (1)

### 1. 연금개혁의 필요성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국민연금은 '99년 4월 도시지역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으며, '09년 8월말 현재 가입자는 1,858만명, 기금운용액은 약 252조원에 달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 보험료 3%, 소득대체율(퇴직前 소득 대비 연금 급여의 비율) 70%였으나, 20년이 지난 2008년 현재 보험료는 9%로 올랐으며,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인하되었고, 매년 0.5%씩 내려 2028년에는 40%가 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7월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기금소진 연도를 당초 2045년경에서 2060년경으로 15년 가량 늦췄으나, 다른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즉, '2007년의 연금개혁'으로 상당히 개선된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개혁과제 이외에 향후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 즉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과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 소득대체율의 저하에 따른 '노후 불안'의 심화, (2) 그에 따른 '소비의 위축', (3) 2천조원 이상의 대규모 적립금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가능성, (4) 기초노령연금과의 역할 재정립, (5) 공무원연금의 개혁 등이 그것이다.

### 2. '2007년 연금개혁'의 평가

OECD에서는 연금제도가 갖춰야 할 3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금수준이 노후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수준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적절성(Adequacy)', 둘째, 대부분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포괄성' (Comprehensiveness; Universal Coverage),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이다.

지난 2007년 7월 통과된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9%를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은 2008년에 50%로, 2028년에 40%로 인하하며, 매월 최대 8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을 2009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로 확대하였다.

위와 같은 '2007년 연금개혁'은 (1)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2) 연금의 '포괄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기여했으나, (3) 연금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후퇴했다고 평가된다.

(1)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08년 8월 발표한 '제 2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40%로 낮춤으로써, 기금의 소진시기를 당초 2047년에서 법개정後 2060년으로 13년 늦추게 되어,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은 상당히 제고되었다.

(2) (연금의 포괄성 개선)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80.4%가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의 최대 70%까지 노후소득의 일부(매월 최대 8만 4천원)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연금의 '포괄성'은 일부 개선되었다.

(3) (연금의 적절성 훼손) 그러나, 위와 같은 2가지 차원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림으로써,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질적 목표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령화의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달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는 '2007년 연금개혁' 이전의 소득대체율 60%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70년도의 연금지출 비율은 GDP의 7.6%에 불과하다. 즉, '연금 재정의 건전성'만 고려하면서 너무 빨리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려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후퇴시켰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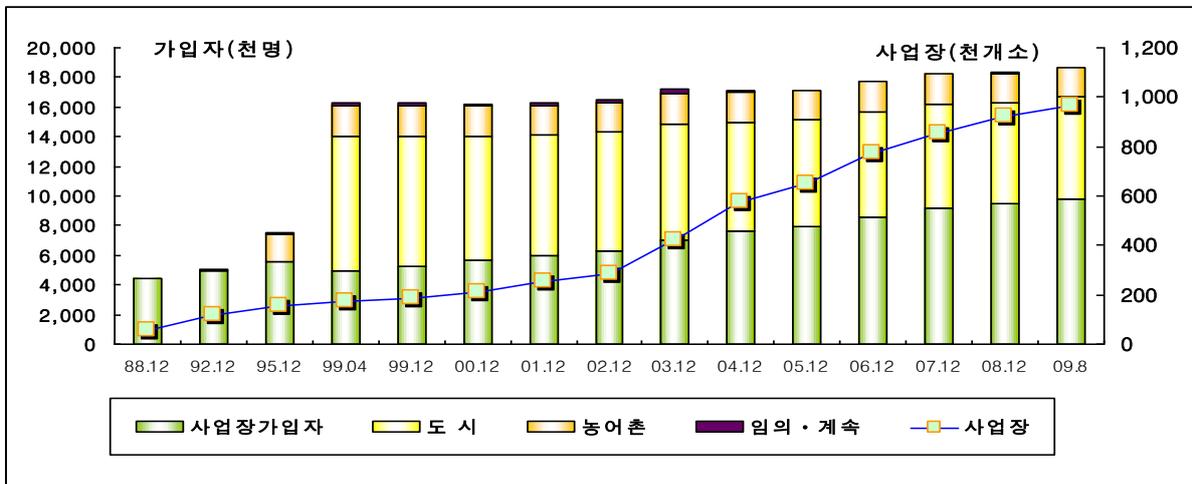
예를 들어, 현재 25세인 평균소득(y) 근로자가 40년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의 소득대체율이 32%에 불과하며, 고소득(2y)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은 17%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경우의 소득대체율 40%는 이태리(78.8%), 스웨덴(64.8%), 프랑스(52.9%) 보다 크게 낮으며, 영국(37.1%), 미국(38.6%), 호주(40%)와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연금제도는 先進化했지만, 그 혜택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 1. 연금개혁의 필요성

○ (국민연금의 과거와 현재)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국민 연금은 1999년 4월 도시지역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으며, 2009년 9월말 현재 가입자는 1,858만 명, 기금운용액은 약 252조원에 달함 (아래 [그림 1],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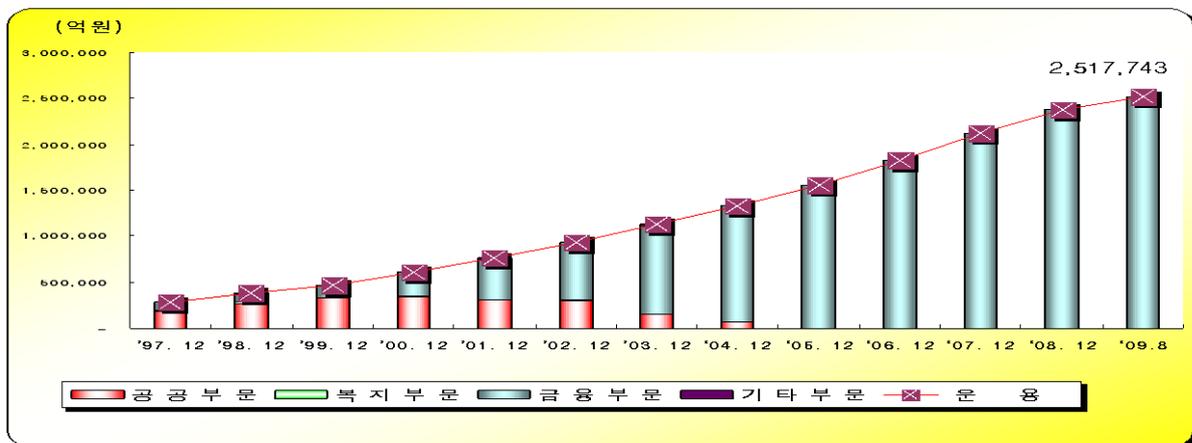
- 1988년 시행 초기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3%, 소득대체율<sup>1</sup>이 70%였으나, 20년이 지난 2008년 9월 현재 연금보험료는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50%로 크게 떨어졌으며, 매년 0.5%p씩 더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될 예정임 (아래 <표 1> 참조)

< 그림 1.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09년 8월말 현재) >



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그림 2.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2009년 8월말 현재) >



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sup>1</sup> 소득대체율은 급여대체율이라고도 하며, 40년을 가입한 근로자 기준으로, 퇴직前 소득 대비 연금급여액의 비율. 소득대체율 50%는 40년 가입 후 지급받는 연금급여액의 비율이 퇴직前 평균소득의 50%라는 것임.

< 표 1.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의 과거, 현재, 미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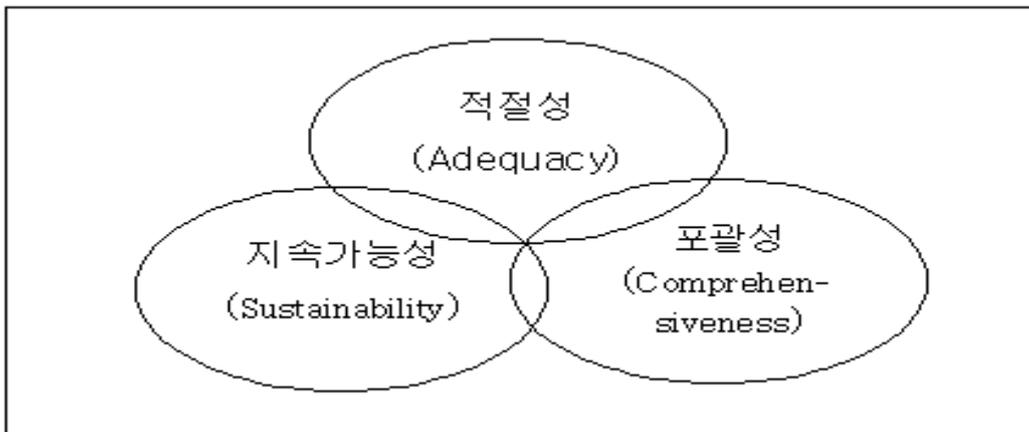
	1988년 (최초)	'93년	'95.7	'98년	'99년	'00.7~'05.7*	2008년 ('07년 개혁)	2009년 → 2028년
직장 보험료	3%	6%	6%	9%	9%	9%	9%	9%
지역 보험료	-	-	3% (농어민)	3%	3% (도시)	4%→ 9% (매년 1%p ↑)	9%	9%
소득대체율	70%	70%	70%	70%	60%	60%	50%	49.5% → 40% (매년 0.5%p ↓)

주 : \*'99년 4월의 국민연금 통합(직장+지역) 이후, 보험료 차이(지역 3%, 직장 9%)를 해소하기 위해 '00년 7월부터 '05년 7월까지 매년 1%p 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9%로 단일화.

○ ( '연금의 3대 목표'(OECD 기준) ) OECD에서는 연금제도가 갖춰야 할 요소로서, 그리고 연금 개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목표로서 다음 3가지 기준을 제시함

- (1) 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에 필요한 수준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적절성'(Adequacy), (2) 대부분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 (3)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임 (아래 [그림 3] 참조)

< 그림 3. 연금의 3대 목표 (OECD 기준) >



- 어느 한 연금을 통해서 위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래 <그림 4>에서와 같이, 상호보완적인 3층의 연금구조를 통해서 연금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1 층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과 같은 소득비례연금(2 층 연금)이 대부분이었다면, 향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3 층 연금)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 그림 4.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3 층 구조 (표준모형) >



○ (연금개혁의 필요성<sup>2</sup>)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7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려 기금소진 연도를 당초 2045년경에서 2060년경으로 15년가량 늦췄으나, '노후소득'의 보장(연금의 '적절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

-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연도가 15년가량 늦춰진 것을 빼면, (1) 소득대체율의 저하에 따른 '노후 불안'의 심화, (2) 그에 따른 소비의 위축, (3) 2천조 원 이상의 대규모 적립금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가능성<sup>3</sup>, (4) 기초노령연금과의 역할 재정립, (5) 공무원 연금개혁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 이제는 참여정부 말기에 상당히 개선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개혁과제 이외에, 향후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할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즉 '노후소득의 보장성 제고'에 포커스를 맞춘 연금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

<sup>2</sup>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확정급부(DB; Defined Benefit)형 연금제도를 '각 개인별로 기여한 만큼 연금을 받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연금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양재진(2007.4)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었음.

<sup>3</sup> 2044년 이후에는 연금수입 보다 연금지출이 많아지므로, 그만큼 자산을 순매도해야 함. 이에 따라,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의 하락가능성도 매우 커질 것임(melt-down effect).

2. '2007년 연금개혁'의 내용과 평가

○ ('2007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2007년 7월 통과된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 2028년 40%로 크게 낮추며,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2009년 70%까지 늘리며 지급액도 평균소득의 5%(2008년)에서 10%(2028년)로 인상함 (아래 <표 2> 참조)

- 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크게 낮춤으로써,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연도를 2060년경으로 15년가량 늦췄으며, 세금을 통해 최대 70%의 노인에게 월 8만 4천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86.5%)의 노후소득을 지원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앞의 [그림 4]와 비슷하게, '기초노령연금'을 1층에 놓고, 2층에 '국민연금'을, 그리고 3층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놓음으로써 '3층 구조'의 밑그림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음

< 표 2. '2007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

<p>◎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를 유지</li> <li>2.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p 씩 낮추어 2028년 이후 40%로</li> </ol> <p>◎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액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 인상</li> <li>2. 2009년 1월 1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의 70%로 확대.</li> </ol>
---

○ ('2007년 연금개혁'의 평가) '2007년 연금개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연금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제고하는 데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연금의 '적절성(Adequacy)' 측면에서는 크게 후퇴했음

-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춤으로써, 기금의 소진시기를 '개혁 以前'의 2047년에서 '개혁 以後'의 2060년으로 13년 늦추게 되어, 연금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재정의 건전성은 제고되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퇴직 이후에 법으로 정해진 (보험료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연금급여를 받아가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이기 때문에, '기금 고갈'의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2007 년 연금개혁'도 임시 대책에 지나지 않음 (아래 <표 3> 참조)
- 즉, 아래 <표 3>의 추계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3 년 2,465 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2044 년 5 조 3,560 억 원의 첫 당기 적자가 발생하고, 2060 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되어, 2003 년도의 1 차 추계에 비해 13 년 연장됨

< 표 3.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기본 (비관적) 가정 >

(단위 : 십억 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 차이	적립 배율	보험료율	적립기금 ('05 년 불변)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 급여				
'08	248,133	41,374	23,808	17,566	6,792	6,373	34,582	31.4	9.0	228,854
'10	325,294	50,851	27,629	23,222	10,328	9,852	40,523	27.6	9.0	282,798
'15	575,098	75,710	39,147	36,562	17,623	17,283	58,087	29.3	9.0	437,613
'20	923,985	109,949	53,421	56,528	31,818	31,364	78,131	26.6	9.0	624,472
'25	1,304,447	135,363	69,007	66,356	55,202	54,614	80,161	22.2	9.0	798,498
'30	1,738,946	176,064	87,150	88,913	86,287	85,525	89,777	19.1	9.0	964,123
'40	2,413,567	240,844	127,764	113,080	198,670	197,440	42,174	11.9	9.0	1,097,752
'43	2,464,507	252,055	140,901	111,154	244,861	243,454	7,194	10.0	9.0	1,056,269
'44	2,459,151	257,173	145,974	111,198	262,529	261,057	-5,356	9.4	9.0	1,033,307
'45	2,440,482	262,100	151,441	110,659	280,770	279,230	-18,669	8.8	9.0	1,005,355
'50	2,110,154	278,988	181,417	97,571	377,879	375,952	-98,891	5.8	9.0	787,331
'55	1,286,378	265,034	205,048	59,986	475,969	473,567	-210,935	3.1	9.0	434,721
'60	-214,225	231,684	231,684	-	596,793	593,799	-365,108	0.3	9.0	-65,571
'70	-	308,703	308,703	-	843,119	838,471	-534,416	-	9.0	-
'78	-	387,432	387,432	-	1,044,438	1,037,827	-657,006	-	9.0	-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년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2008.8.19).

- (연금의 포괄성 개선) 아래 <표 4>에 따르면, 2008 년 4 월 현재 65 세 이상 노인의 19.6%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연금의 포괄성이 다른 국가에 비교하여 크게 뒤떨어짐을 알수 있음
-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65 세 이상 노인의 최대 70%까지 노후소득의 일부(최대 월 8 만 4 천원)를 지원받음으로써, 연금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은 다소 개선됨
-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에 따라, 2008 년에는 약 300 만명, 2009 년에는 약 360 만명의 노인이 연금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됨

< 표 4. 각국의 노령소득보장 수급자 규모 변화 >

수급자 규모 변화 (65 세 이상 인구 대비)	
<b>미국</b>	(1) OASDI+SSI - 1940 년 : 22.3%→1950 년: 36.6%→1955 년: 53.9%→1960 년: 71.6%→1970 년 : 89.6%→1980 년: 94.1%→1990 년: 94.4%→2004 년: 95.0% (2)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 1940 년 : 0.7%→1950 년: 16.5%→1960 년: 61.6%→1970 년: 85.5%→1980 년 : 91.4%→1990 년: 92.4%→2004 년: 92.6% (3)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 1940 년 : 21.7%→1950 년: 22.4%→1960 년: 14.1%→1970 년: 10.4%→1980 년 : 8.7%→1990 년: 6.6%→2004 년: 5.4%
<b>일본</b>	(1) 국민연금(노령기초연금) - 1965 : 11%→1975 년 : 50%→1985 년 : 96%→1995 이후 : 98% - 2004 년 4 월 65 세 이상 2,475 만명 중 2,434 만명이 수급 개인기준 98.4%) (2)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등) + 은급 - 2004 년 4 월 기준 고령자세대 787 만 세대 중 759 만세대 수급(96.5%)
<b>캐나다</b>	(1) OAS(Old Age Security) - 1951 년 :47%, 1952 년 :94%(70 세이상 노인)→2000 년 : 65 세 이상 노인 93% (2) 노령부조→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1967 년 도입) - 1953 년: 65-69 세 노인의 20%→2001 년 GIS 65 세 이상의 33.7%
<b>호주</b>	● Age Pension - 1910 년 28%→1950 년 40%→1980 년 77%→2003 년 69% (보훈연금 13% 합하면 82%)
<b>한국</b>	(1) 국민연금 - 2008 년 : 19.6%(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합하면 23.1%)→2050 년 : 79.3% 추정 (노령, 유족, 장애연금 65 세 이상 수급자) (2) 기초노령연금: 2008 년 ( 60% ) → 2009 년 ( 70%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07), 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의 국제비교연구에서 인용.

주 : 1. 한국은 2008 년 4 월 기준이며, 2050 년은 2008 년 재정추계 결과임.

2.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율(65 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은 제도가 성숙한 2000 년 이후 82%~98%로 나타나고 있음.

- (연금의 적절성 저하) 그러나, 위와 같은 2 가지 차원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7 년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림으로써,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의 본질적 목표에 크게 미달함

- 소득대체율이 2008 년에 가입기간 40 년을 기준으로 50%로 떨어지고, 2028 년에는 40%까지 낮아짐에 따라,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연금의 적절성; Adequacy)이라는 본질적 목표는 뒤로 밀리고, 기술적 목표인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만 몰두했다는 의견<sup>4</sup>이 대두됨

<sup>4</sup> 김연명(2007.7)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용돈'연금 수준으로 퇴보했다고 비판함.

- 아래 <표 5>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에서 국민연금 급여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17%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007 년 연금개혁' 以前(소득대체율 60%)의 상태에서도 2010 년도의 연금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 2070 년도에는 7.6%에 불과<sup>5</sup> 함

< 표 5. 국가별 연도별 연금급여(Old-Age Pensions)의 GDP 비중 추이 >

Country \ Year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Australia	2.9	3.0	3.2	3.6	3.9	4.2	4.3	4.5	4.5	4.5
Austria	9.7	10.7	10.7	11.5	12.6	13.5	13.8	13.3	12.4	11.8
Belgium	8.4	8.5	9.1	9.9	10.9	11.9	12.4	12.5	12.3	12.1
Canada	5.3	6.0	6.7	7.6	8.7	9.6	10.1	10.4	10.3	11.0
Czech Republic	8.2	8.8	9.4	10.4	10.9	11.8	12.4	13.3	14.2	14.6
Denmark	6.7	7.7	8.5	9.0	9.3	9.6	9.7	9.6	9.3	8.8
Finland	7.8	8.3	9.7	10.9	11.8	12.6	13.0	12.9	12.9	12.9
France	12.2	13.1	14.2	15.0	15.6	16.0	16.0	15.8	NA	NA
Germany	11.4	11.2	11.8	12.6	14.0	15.5	16.4	16.6	16.8	16.9
Italy	14.1	14.3	14.7	14.9	15.4	15.9	15.9	15.7	14.9	13.9
Japan	8.3	8.6	8.8	8.5	7.9	7.5	7.5	8.2	8.5	8.5
Netherlands	5.3	6.0	6.6	7.3	8.3	9.3	10.0	10.5	10.2	10.0
New Zealand	4.7	5.1	5.9	6.8	8.0	9.1	10.0	10.4	10.5	10.6
Norway	5.2	5.6	6.7	8.1	9.3	10.7	11.8	13.0	13.0	12.9
Spain	9.2	9.2	9.5	10.1	11.2	12.7	14.5	16.1	17.3	17.4
Sweden	9.4	9.7	10.4	10.7	10.8	11.2	11.4	11.3	11.0	10.8
United Kingdom	4.2	4.1	4.0	3.9	4.1	4.3	4.3	4.1	3.8	3.6
United States	4.3	4.3	4.8	5.4	5.9	6.2	6.4	6.3	6.2	6.2
Portugal	8.9	10.0	11.2	12.3	13.4	14.0	14.1	14.2	13.8	12.5
Korea (South)*	0.4	0.9	1.1	1.4	2.0	2.5	3.1	3.9	4.8	5.5

자료 : OECD(2001).

주 : 한국의 경우, 처음(\*) 데이터는 2007 년 연금개혁 이후의 추계(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8)에 따른 것이며, 두 번째(\*\*) 데이터는 연금개혁 이전의 추계(문형표, 2008.2)에 따른 것임.

- 아울러, '2007 년 연금개혁' 이후에도, 연금지출의 GDP 비율은 2010 년에 0.9%, 2070 년에 기본 가정 時 7.0%에서 대안(비관적) 가정 時 5.8%에 불과함 (아래 <표 6> 참조)

<sup>5</sup> 문형표("2007년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연금포럼」, VOL.28, 2008년2월),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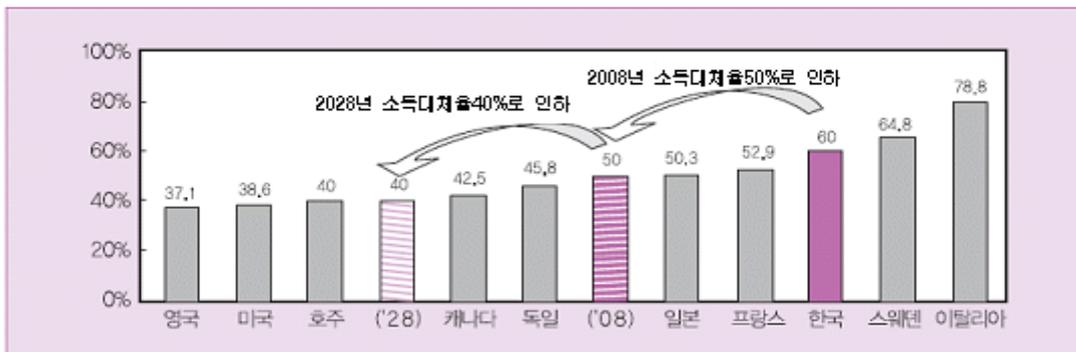
< 표 6. GDP 대비 연금급여의 지출비율 추이 (단위 : 십억 원, 경상가, %) >

	'07 개혁 以前	'07 개혁 以後) 기본 가정			'07 개혁 以後) 대안 가정		
	지출 비율	GDP (a)	연금 급여 지출 (b)	비율 (b/a)	GDP (a)	연금 급여 지출 (b)	비율 (b/a)
<b>2010 년</b>	0.6	1,145,006	9,852	0.9	1,145,006	9,852	0.9
<b>2030 년</b>	3.1	3,483,571	85,525	2.5	3,418,257	85,325	2.5
<b>2050 년</b>	6.7	6,864,506	375,952	5.5	7,206,686	368,593	5.1
<b>2070 년</b>	7.6	11,925,249	838,471	7.0	14,201,836	825,294	5.8

자료 : 문형표(2008.2),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08.8).

- (연금제도는 先進化, 혜택은 감소) '2007 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과 재정안정성 제고의 속도는 선진국보다 빠른 편이며, 이로 인해 제도는 先進化했지만 그 내용과 혜택은 감소
- 아래 <그림 5>에 잘 드러나 있듯이, 국민연금에 40 년 가입했을 경우에 소득대체율은 2028 년 40%로 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이는 영국(37.1%), 미국(38.6%), 호주(40%), 캐나다 (42.5%)와 비슷하고, 일본(50.3%), 프랑스(52.9%), 스웨덴(64.8%), 이탈리아(78.8%)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임

< 그림 5.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국제비교 >



자료 : 정호원(2008.2).

- (특히 25 세 이하 젊은 층과 고소득층의 연금혜택 크게 하락) 문형표(2008.2)의 추계 결과(아래 <표 7>)에 따르면, 2008 년 현재 25 세인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법개정' 前에 비해 30%나 하락하였으며, 소득계층별로 보면 평균소득 이하(Y/3, Y/2)의 근로자는 소득대체율의 하락폭이 작는데 비해, 평균소득(Y) 근로자와 고소득(2Y)층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특히, 현재 25 세인 평균소득(Y)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은 40 년 가입시에 32%, 고소득 (2Y)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은 17%로서 '용돈'연금으로 전락하여, 정부가 홍보했던 "2028 년 소득대체율 40%"와 너무 큰 차이가 있음

< 표 7. 2007 년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의 급여수준 변화 >

a. 2008 년 당시 55 세인 남성독신근로자의 경우\* (단위 : 천원, 배, %)

소득수준	평균근로자 1/3		평균근로자 1/2		평균근로자		평균근로자 2 배	
	개정前	개정後	개정前	개정後	개정前	개정後	개정前	개정後
연금급여액(B)	694	666	828	794	1230	1180	1375	1318
평생평균소득(y)	1377	1377	2065	2065	4130	4130	8713	8713
소득대체율(B/y)	50.38	48.37	40.09	38.46	29.79	28.56	15.79	15.13
수익비	3.35	3.22	2.67	2.56	1.98	1.90	1.89	1.82
(개정後/개정前)		96.1		95.9		96.0		96.3
내부수익률(IRR)	10.59	10.37	9.34	9.11	7.71	7.48	7.46	7.23

\* 총 가입기간: 26 년

b. 2008 년 당시 40 세인 남성독신근로자의 경우\* (단위 : 천원, 배, %)

소득수준	평균근로자 1/3		평균근로자 1/2		평균근로자		평균근로자 2 배	
	개정前	개정後	개정前	개정後	개정前	개정後	개정前	개정後
연금급여액(B)	1744	1473	2075	1751	3069	2586	3696	3112
평생평균소득(y)	2266	2266	3399	3399	6799	6799	14790	14790
소득대체율(B/y)	76.94	64.98	61.04	51.51	45.15	38.04	24.99	21.04
수익비	3.03	2.56	2.41	2.03	1.78	1.50	1.64	1.38
(개정後/개정前)		84.5		84.2		84.3		84.1
내부수익률(IRR)	7.70	7.06	6.82	6.17	5.66	4.99	5.30	4.65

\* 총 가입기간: 39 년

c. 2008 년 당시 25 세인 남성독신근로자의 경우\* (단위 : 천원, 배, %)

소득수준	평균근로자 1/3		평균근로자 1/2		평균근로자		평균근로자 2 배	
	개정前	개정後	개정前	개정後	개정前	개정後	개정前	개정後
연금급여액(B)	2711	1926	3250	2309	4868	3458	5784	4109
평생평균소득(y)	3595	3595	5393	5393	10786	10786	23532	23532
소득대체율(B/y)	75.40	53.57	60.27	42.81	45.13	32.06	24.58	17.46
수익비	2.73	1.94	2.18	1.55	1.64	1.16	1.51	1.08
(개정後/개정前)		71.1		71.1		70.7		71.5
내부수익률(IRR)	6.98	5.75	6.18	4.93	5.12	3.85	4.77	3.55

\* 총 가입기간: 40 년

자료 : 문형표 (2008.2).

김동열 연구위원 (3669-4112. dykim@hri.co.kr)